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36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구자근 • 우재준 • 김소희

김정재 • 조지연 • 김선교

박준태 • 이만희 • 배준영

박덕흠 • 김석기 • 박형수

의원(12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딜 레마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음.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 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 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수 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 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시행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하며,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원전수출사업자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세제지원에 관한특례 등을 두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바. 기타 원전수출사업자 등의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전"이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기, 열 또는 연구 및 산업적 용도의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 2. "원전산업"이란 원전 관련 기자재 및 원전연료 등의 물품을 제조 · 공급 및 원전의 건설 · 제작 · 시운전 · 운영 · 정비 · 해체 등의 용 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원전, 원전 관련 기자재 및 원전연료 등의 물품과 원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 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와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4. "원전수출사업자"란 원전수출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5. "원전수출지원기관"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원전수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전수출사업자와 원전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원전수출지원의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등

- 제5조(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전수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원전수출 관련 국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워전수출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 원전수출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워전수출 관련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6. 원전수출 관련 국제교류·협력, 글로벌 공급망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 7. 원전생태계 관련 기자재, 물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원전수출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수출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원전수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협회·단체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원전수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수출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원전수출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사항
 - 3. 원전수출 관련 원전수출사업자,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 4. 원전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원전수출 대상국의 원전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7.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소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 8. 원전수출 관련 종합적인 홍보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원전수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수출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전수출 관련 정보를 원전수출사업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수출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원전수출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등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 전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하여 원전산업에 관한 국제

협력, 기술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원전수출사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2.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융자 · 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 3. 그 밖에 원전수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1. 원전수출 보증을 위한 자금
 - 2. 원전수출을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3. 원전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필요한 자금
- 4. 원전국산화에 필요한 개발자금
- 5. 그 밖에 원전수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원전수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및 용역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가 원전수출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 및 기술 등을 국내외에서 인증받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원전수출사업자의 사업재편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원전수출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원전수출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원전수출지원 특례 등

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
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

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내용과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원전수출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거나 원전 수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2조, 제20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 3. 그 밖에 원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인허가등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 ·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원전수출사업자 가 국내복귀 및 정착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요건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9조(원전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원전수출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원전수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원전수출사업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법인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할수 있다.
- 제22조(원전수출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 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

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원전수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4조(협회 등의 설립) ① 원전수출사업자, 연구기관, 원전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하 "원전수출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원전수출지원 활성화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원전수출사업자등은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원전수출사업자등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 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28조(벌칙)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